

case  
2

## 미완성 우편 요금기

### 요약

사례명	미완성 우편 요금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사례번호	HQ H303529 (2019.06.06.)
사실관계	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프린트 축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입되며,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중국 내에서 제조된 후 말레이시아산 프린트 축과 최종 조립되어 미완성 우편 요금기가 완성됨(프린트 축은 전체 부품 비용의 약 63% 차지)
쟁점 및 판정	<p>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p>다음의 이유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원산지는 중국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프린트 축의 가치가 다른 구성요소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는 부차적인 고려 사항임</li><li>- 프린트 축은 중국에서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되면서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일부로 흡수되어 그 일부분이 되며, 프린트 축이 봉투 및 우편 요금 테이프에 우편 요금 표시를 인쇄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할지라도, 중국에서 결합되는 다른 구성요소들 없이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</li><li>- 반면, 프린트 축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는 대부분 중국산 부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되며, 최종 조립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 했을 때, 중국에서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</li></ul>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</li><li>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</li></ul>

## I 판정사례<sup>1)</sup>

### 사례명 [미완성 우편 요금기]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HQ H303529 (2019.06.06.)

#### 사실관계

요청자 Brother Industries (USA), Inc. (대리인: Barnes, Richardson & Colburn, LLP)

제품명 미완성 우편 요금기

- 프린트 축(Print Axis): 말레이시아산
  - 메인 PCBA, 인쇄 헤드 카트리지, 와이핑 스테이션, 프라이밍 스테이션, 잉크 공급 시스템 등으로 구성됨

제품 구성 기타 서브 어셈블리: 중국산

- 프린터 모듈 베이스 어셈블리 (Printer module base assembly)
- 이송 어셈블리 (Transport assembly)
- 폐잉크 트레이 (Waste ink tray)
- 커터 어셈블리 (Cutter assembly)
- 테이프 이송 어셈블리 (Tape transport assembly)
- 커버 어셈블리 (Cover Assembly)

용도 우편 처리 시스템에서 우편 요금 표시를 물리적으로 인쇄하는 프린터로 기능

#### 제조공정



01

말레이시아산 프린트 축을  
중국으로 수입



02

중국에서 여러 서브  
어셈블리 제조



03

최종 조립



04

미국 수출

#### 상세공정

1. 말레이시아산 프린트 축을 중국으로 수입
  - 프린트 축 생산을 위한 부품 중 약 11%만이 중국산이며, 나머지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
2. 중국 제조 공정
  - 여러 서브 어셈블리 제조 (대부분 중국산 부품 사용)
    - 프린트 축과 중국에서 생산된 여러 서브 어셈블리를 너트와 볼트로 결합
      - \* **프린터 축은 전체 부품 비용의 약 63% 차지**
3. 최종 제품 미국 수출

1)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

## 쟁점사항

- ✓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## 관련 법령 및 분석

1

##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## 관련 법령 검토

- ▣ 『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』에 따르면,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, 지워지지 않게,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
- ▣ 『19 C.F.R. § 134.1(b)』에 따르면,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, 생산,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,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,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이 발생해야 함
  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
❖ 참고 판례: *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*, 27 C.C.P.A. 267 (1940)

❖ 참고 판례: *Texas Instruments v. United States*, 681 F.2d 778, 782 (1982)

-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,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(totality of the circumstances)하여 사례별(case-by-case)로 이루어짐
- 이때, 부품들의 원산지,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,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, 성질,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,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,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, 실제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,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

## 판정 결과

- ▣ 신청인은 프린트 측이 전체 부품 비용의 약 63%를 차지하며, 프린트 측이 수행하는 인쇄 기능은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본질적 특성(essential character)을 부여하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프린트 측의 원산지인 말레이시아산이라고 주장함
- ▣ 하지만 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
  - 프린트 측의 가치가 다른 구성요소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는 부차적인 고려 사항임
  - 프린트 측은 중국에서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되면서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일부로 흡수되어 그 일부분이 되며, 프린트 측이 봉투 및 우편 요금 테이프에 우편 요금 표시를 인쇄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할지라도, 중국에서 결합되는 다른 구성요소들 없이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
  - 반면, 프린트 측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는 대부분 중국산 부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되며, 최종 조립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 했을 때, 중국에서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

## 결론

- ✓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원산지는 중국임

## ② 시사점

- CBP는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정 시 총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므로, 특정 구성요소가 본질적인 기능을 부여하더라도, 여러 서브 어셈블리 제조, 최종 조립 등이 한 국가에서 수행되어 해당 국가에서 최종 제품 생산에 기여한 바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기도 함

## ③ 참고자료

- CBP Ruling HQ H303529 (2019.06.06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H303529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>
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1304&num=0&edition=prelim>
- 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 (1940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1707/united-states-v-gibson-thomsen-co/?q=United+States+v.+Gibson-Thomsen+Co>
- 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 (1982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8163/texas-instruments-inc-v-united-states/?q=Texas+Instruments%2C+Inc.+v.+United+States>